

부산지방법원 2022. 10. 19 선고 2021나6549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 주식회사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영

피고, 항소인 C

변 론 종 결 2022. 9. 21.

판 결 선 고 2022. 10. 19.

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. 10. 21. 선고 2020가단206092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. 5. 16. 체결된 매매계약을 75,926,9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75,926,9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E 주식회사는, 2015. 7. 24. D에게 69,000,000원을 이자 연 10.9%, 연체이자율 연 24%로 정하여 대출하였고, 2019. 6. 20.경 원고에게 D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.

나. 원고는 D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30261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20. 4. 17. 'D은 원고에게 61,290,924원 및 그 중 43,816,792원에 대하여 2020. 2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,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다. D은 채무초과상태에서 2016. 5. 16. 자신의 처제였던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)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(이하 '이 사건 처분행위'), 같은 해 6. 16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.

마. 피고는 2016. 6. 30.경 주식회사 H에 이 사건 처분행위 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(2013. 7. 19. 접수 제72887호 및 제72888호)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, 위 각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는데,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합계 60,438,520원(= 41,679,816원 + 18,758,704원)이었다.

바. 한편, 2021. 4. 16.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55,000,000원이고, 2021. 6. 22. 기준 D의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채무는 원금 43,816,792원, 이자 32,110,141원 등 합계 75,926,933원이다.

[인정근거 : 다툼 없는 사실, 갑1 내지 5, 9 내지 19호증, 을4, 5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주식회사 J, K캐피탈, L 주식회사, M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, 변론전체의 취지]

2. 판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의 취소를 구하는

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D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,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.

다. 이에 대하여 피고는,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,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채무자의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,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바(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),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라.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당시 H 주식회사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처분행위 후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, 피고는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 방식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,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금액은 위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 시가에서 사해행위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과 변론종결 당시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이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변론종결일 무렵 위 부동산의 시가인 155,000,000원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60,438,520원을 뺀 94,561,480원과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적은 금액인 75,926,933원을 반환하여야 한다.

마.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5,926,9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

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서호원, 판사 이은명, 판사 정일예

별지 목록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부산광역시 해운대구

동

[도로명주소] 부산광역시 해운대구
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

공동주택

1층 591.14㎡

2층 591.14㎡

3층 591.14㎡

4층 591.14㎡

5층 591.14㎡

6층 591.14㎡

지하 159.96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6층 호

철근콘크리트조

74.10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부산광역시 해운대구

대 3822㎡

2. 동 소

대 7163.7㎡

3. 동 소

대 2681.9m'

4. 동 소

대 5071.7m'

5. 동 소

대 3435.4m'

대지권의종류 : 1, 2, 3, 4, 5.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: 1, 2, 3, 4, 5. 22174.7분의 53.3073

